

<h1 style="margin: 0;">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</h1>		처리기간
		즉시
<b>신고인 (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)</b>		
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
③ 주 소		
<b>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(종전의 승용자동차)</b>		
④ 차량등록번호		
⑤ 처분내용		⑥ 처분일
<b>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(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)</b>		
⑦ 차량등록번호		⑧ 취득일
<p>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,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left: 200px;">            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left: 200px;">             신고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left: 50px;"> <b>세무서장</b>    귀하         </p>		
구비서류	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(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)	수수료
	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(처분사항이 표시된 것)	없음
<p><b>※ 작성방법</b></p> <p>1. 노후차의 처분일란에는 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.</p> <p>2. 신차의 취득일란에는 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</p>		